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서범수・이헌승・구자근

김기현 · 서천호 · 박성민

김은혜 • 이인선 • 장동혁

곽규택 • 백종헌 • 신성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 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 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6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	
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
	축된 근로시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